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30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방법에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추가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상회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2. 18.

다. 회 부 일 : 2025.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등록을 위해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칩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Ⅲ. 검토의견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방법에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추가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록방법의 예시에 ①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방법과 ②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u>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u>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 ----- ----- ----- <u>유전자</u> <u>검사 정보 등록, 무선전자개체식</u> <u>별장치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u> <u>등록하여야</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u>방법·절차</u>,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 <u>절차</u>-----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자검사 정보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1)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은 등록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²⁾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록방법의 예시로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방법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과 함께 새로운 등록방법인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방법은 임의 제거 및 분실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행 동물 등록방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체 식별 소요 시간 및 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생체인식 방식이 기술 검증 중³⁾이므로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

-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라 동물 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한다.

[별표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2.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나. 무선식별장치의 표준규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2009)와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KS C ISO 11785: 2007)에 따를 것(국제표준규격 ISO 11784: 1996, ISO 11785: 1996을 포함한다)
- 2)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에 따를 것
- 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될 것

- 3) 현재 동물의 안면, 비문(코주름), 복정맥(배의 정맥) 데이터를 통한 개체식별 방식 개발을 위해 과기부 실증특례가 진행 중임(총 7개 업체)

한 개체 식별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등록 방식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대부분의 국가(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동물검역의 필수요건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이 의무화되어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중복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으므로 동물 등록 방식을 내장칩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은 임의제거·분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행 등록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입법취지와 유전자검사의 비용, 개체 식별 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4

□ 추진배경

- 반려동물의 등록 관리를 통한 유실·유기동물 발생방지 등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 운영체제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도 구축 및 지원(교육·홍보)
- 농림축산검역본부 : 무선식별장치 제조·수입업체 및 품목 허가, 국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 등
- 시·군·구 : 무선식별장치 납품 계약 체결, 동물등록(대행가능)

□ 주요내용

- 등록대상동물 :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등록, 고양이는 자율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등록방법 :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삽입(내장형), 외부부착(외장형)하는 두 가지 방법

< 등록 절차 >

구분	등록대행기관	소유자	참고
1단계 (방문)	■ 등록대행기관 방문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 소유자 신분증 지참	
2단계 (등록)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 소유자 정보 및 동물정보 입력	
3단계 (등록정보 생성)	■ 무선식별장치 삽입 - 내장형 삽입(동물병원 등) - 외장형 장착(동물판매업소) ■ 동물등록번호 발급·안내	■ 등록비 (시술비, 무선식별장치 구매, 등록 수수료* 비용 포함) - 내장형: 40,000~60,000원 - 외장형: 15,000~40,000원 *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일부 지자체 등록비용 지원
4단계 (승인)	■ 시군구청 승인 - 동물등록증 발급	■ 동물등록증 직접 방문이나 우편물 통해 수령	

참고2

동물등록 연도별, 유형별 현황

□ 동물등록 현황

년도	계(마리)	등록형태	
		내장형(마리)	외장형(마리)
2023	3,286,216	1,658,538	1,627,678
2022	3,054,342	1,535,128	1,519,214
2021	2,782,811	1,399,233	1,383,578

* 외장형 수치는 기존 인식표등록 포함

□ 반려견 동물등록 연도별, 유형별 현황

(단위 : 마리, 비율(%))

년도	신규 등록										누계(사망 제외)		
	합계 (전체)	증감 (전년비,)	유형별									합계	증감 (전년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계	비율	증감 (개체수, 전년비,)	계	비율	증감 (개체수, 전년비,)	계	비율	증감 (개체수, 전년비,)		
2021	500,321	↑ 112.3	227,863	45.5	↑ 64.1	265,658	53.1	↑ 534.4	6,800	1.4	↓ 87.6	2,766,250	↑ 19.1
2022	290,958	↓ 41.8	134,375	46.2	↓ 41.0	156,583	53.8	↓ 41.1	-	-	-	3,025,859	↑ 9.4
2023	257,989	↓ 28.0	125,338	48.6	↓ 6.7	132,651	51.4	↓ 15.3	-	-	-	3,244,234	↑ 8.0

□ 반려묘 동물등록 현황(연도별 비교)

(단위 : 마리, 비율(%))

년도	신규 등록		누계(사망 제외)	
	전체(내장형)	증감(개체수, 전년비, %)	합계	증감(개체수, 전년비, %)
2021	9,683	↑ 98.1	16,559	↑ 149.7
2022	11,639	↑ 20.2	28,483	↑ 72.0
2023	13,184	↑ 13.2	41,982	↑ 47.4

참고3**해외 주요국가 동물등록 현황**

나라명	등록의무대상	등록방법
미국 (각 주별로 자체적 운영)	대체로 개	인식표, 마이크로칩, 문신 등
영국	개, 말	마이크로칩
독일 (각 주별로 자체적 운영)	개	인식표, 마이크로칩, 문신 등
프랑스	개, 고양이	마이크로칩, 문신
호주	개, 고양이	마이크로칩
뉴질랜드	개	마이크로칩
대만	개	마이크로칩
싱가폴	개	마이크로칩
일본	상업용 개, 고양이	마이크로칩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해외사례조사」